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등록관리 매뉴얼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등록관리 매뉴얼

목 차

1.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4
2. 산림사업법인 신규등록	7
3. 산림사업법인 기재사항 변경	11
4.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	15
※ <관계 법령 3단 비교표>	
5. 법인의 민원신청이 잘못된 사례	23
6.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 가입안내	25
7.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27
8. 나무병원 및 나무의사 제도 안내	32
9. 나무병원 등록기준	34
10. 나무병원 신규등록	36
11. 나무병원 기재사항 변경	40
12.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43
13. 나무의사 및 나무병원 행정처분	44

산림기술자 자격증 관련 민원은 한국산림기술인회(☎ 042-489-8580)로 문의

산림사업법인 등록

산림사업법인 등록 신청 접수

(사도, 처리기간 15일)



- 등록(자격)요건확인 (등록신청 구비서류상)
 - 신청서
 - ※ 인적사항 및 등록신청 산림사업의 종류 여부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 ※ 등기부상에 신청하는 산림사업 등재 여부 및 대표자 확인
 - 자격증 사본 또는 「산림기술법」에 따른 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
 - ※ 자격증 사본에 원본대조필(법인 인감 날인) 여부 확인
 - 자격증소지자가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산림기술법」에 따른 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 (고용보험가입 확인서 사본)
 -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경영지도사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진단) 및 기업진단회계 법인 사업등록증(사본)
 - ※ 사업자 등록된 공인회계사의 1개월 이내에 진단 여부확인

관계기관 조회



결재 · 시행



대 장 관 리

- 자격증발급(한국산업인력공단, 「산림기술법」에 따른 수탁기관 등) 진위 여부 확인
- 시·도별 홈페이지 고시 및 산림청에 등록 결과 보고
- 소속기관 및 당사자 법인에 결과 통보
-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상 법인관리이력부에 등재 · 관리

산림사업 법인 행정지도

시정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공정예정표대로 발주 받은 산림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산림사업법인의 중요사항*의 변경등록을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1개월) 안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주소지),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3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1개월을 경과하였을 때

6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시정명령(위 4개 항목)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징금 강제징수규정 마련('20.08.28.시행)

등록취소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때
- 폐업한 경우
 - ※ 폐업 이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법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수 없음.

등록취소 절차

- 당연취소 및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법인
 - 청문실시
 - 청문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고시 및 취소내용 알림
 - 법인등록 취소
- ※ 법인해산절차에 따라 법인을 자진해산하고 산림사업 법인을 등록취소 시 청문절차 없음

1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표1>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제25조 관련)

산림사업의 종류	산림사업의 범위	자 격 요 건		
		기술수준	자본금	시설
1. 산림경영 계획 및 산림조사	가.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나. 임황(林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2명 이상	1억원 이상	사무실
2.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가. 조림 나. 숲가꾸기 다. 벌채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 술자 4명 이상	1억원 이상	
3. 삭제 <2018. 6. 26.>				
4. 산림토목	가. 임도사업 나. 사방사업 다. 「산지관리법」 제41 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 기술자 2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 기술자 3명 이상	3억원 이상	
5. 자연휴양 림 등 조성	가. 자연휴양림조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 다. 산림욕장 조성 라. 치유의 숲 조성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 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	3억원 이상	

	마. 숲속야영장 조성 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 유아숲체험원 조성 아. 산림교육센터 조성 자. 수목장림 조성	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6.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가. 도시숲에서의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나. 생활숲의 조성·관리 다. 가로수의 조성·관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1억원 이상
7. 숲길 조성·관리	숲길 조성·관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 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 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3억원 이상
비고 1. 이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이미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기술수준: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본금: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3. 이 표에서 "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4. 이 표에서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그 자본금별로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이 표에서 "사무실"이란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적합한 시설로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주소지)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산림사업법인 신규등록

□ 등록신청 구비서류 → 법인(민원인)

○ 등록신청서<표2>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원에서 발급

- 말소사항 포함(O), 현재 유효사항(X)

- 법인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열람동의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등본제출 생략가능

○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4대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 산업재해보험) 모두 가입하고 기술자 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 확인서 첨부

- 법인에 종사하는 기술자 이름이 모두 등재된 서류첨부 <표3>

○ 자격증 사본 : 기록사항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사본 제출 또는 「산림기술법」에 따른 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

- 법인인감 및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한국산림기술인회가 발급한 산림기술자 자격증(초급, 중급, 고급 등의 형식)

○ 기업진단보고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민원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경영지도사가 평가한 기업진단보고서

(예) 2022년 3월 20일 전라남도에 법인등록신청서가 접수된 경우→2022년 2월 20일부터 2022년 3월 19일 사이로 진단기준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받은 것

○ 사무실 보유 확인서

- 제출서류 : 임차계약서, 건축물등기부 등본 및 용도가 기록된 건축물 관리대장

※ 임차계약서 공증방법(예)

- 쌍방합의의 경우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제3자 공증방법 : 부동산 중개업자 서명 날인한 임차계약서 첨부
- 근저당권 설정 : 임차인(법인)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 등본 첨부
- 세무서 확인 필한 임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 신청서 접수 → 전라남도지사

- 민원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5일 (법정공휴일 제외)

○ 검토사항

- 자격증 취득, 4대보험 가입, 자본금 보유,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등재 사항, 기술자 이중취업 또는 자격여부, 사무실 적합여부

<표2>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7. 6. 1.>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기번호	법인설립일		
	신청 산림사업 종류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 (등록번호:)		
	자본금 보유현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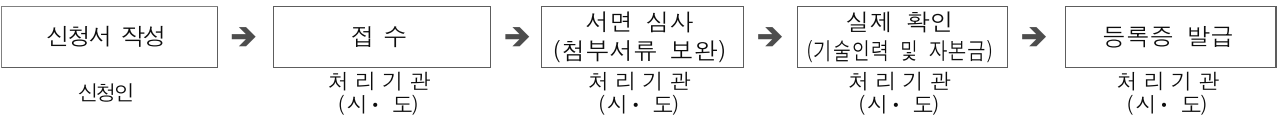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술인력 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작성 방법

신청 산림사업 종류란과 기술인력 보유현황란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산림사업의 종류와 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표3〉

☐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일련 번호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격등급	자격증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작성요령

- ① 성명 : 법인에 소속된 모든 기술자(영림단원 포함)를 기록
- ②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기재
 - 주민등록상 1963년 5월 26일의 남자는 630526으로 기록
- ③ 기술자격 등급
 - 산림경영기술자(기술특급, 기술초급, 기술중급, 기술고급, 기능특급, 기능1급, 기능2급)
 - 산림공학기술자 (기술특급, 기술초급, 기술중급, 기술고급)
 - 목구조관리기술자
 - 건축기사
- ④ 자격증 번호
 - 산림기술자 : 자격증발급번호를 기재
(예) 01-21-11-00001 등으로 기재
 - 국가기술자격자 :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기재

3 산림사업법인 기재사항 변경

법인의 명칭, 법인의 주소지, 법인의 대표자, 기술자의 수와 종류 등이 변경 사유 발생시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 (의무사항)

□ 변경등록 신청 구비서류

- 변경등록 신청서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명칭,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 말소사항 포함(O), 현재 유효사항(X)
- 기 발급받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술자의 수와 종류 변경 등록의 경우)
 - 고용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1부.
 - 법인에 종사하는 기술자(영림단원 포함) 이름이 모두 열거된 서류첨부
 - 자격증 사본 또는 「산림기술법」에 따른 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 : 기록사항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복사

① 법인의 대표자, 상호(명칭) 변경의 경우

- 변경등록 신청서<표4>
- 법인등기부 등본 (말소사항 포함)
- 법인 인감증명서
-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 발급받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원본)

② 주소지 변경의 경우

- 변경등록 신청서 <표4>
- 법인등기부 등본 (말소사항 포함)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본인 건물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가능)
-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원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공증방법>

- 쌍방합의의 경우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제3자 공증방법 : 부동산 중개업자 서명 날인한 임차계약서 첨부
- 근저당권 설정 : 임차인(법인)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 등본 첨부
- 세무서 확인 필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③ 기술자격자 변경의 경우

- 변경등록 신청서<표4>
- 기술자의 수와 종류가 변경 등재된 서류 첨부 <표5>
- 자격증 사본 : 기록사항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복사 또는 「산림기술법」에 따른 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
 - ※ 퇴사 직원의 경우 신청서에 퇴직 날짜를 반드시 기재
-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술자는 4대보험 모두 가입)
 - ※ 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1부.
 - 법인에 종사하는 기술자(영리단원 포함) 이름이 모두 열거된 서류 첨부
- 입사 직원의 경우 산림사업법인 관리시스템 내 산림기술자 상세현황조회, 다른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다른 법인의 퇴직증명서 첨부
 - ※ 퇴직증명서는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 가능, 법인 인감은 스캔본 직인도 허용

□ 변경등록 절차

- ①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 → 민원처리기간 7일 (법정공휴일 제외)
- ②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 법인등기부 등본, 자격증 진위여부, 보험 가입여부, 법인의 인감증명 및 날인된 인감 비교, 기술자 이중취업 또는 자격증 대여여부, 사무실 확인
- ③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및 변경등록 내용 알림
 -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상 법인 이력부 정리, 해당산림사업법인 통보 (변경등록증 교부)

※ 「산림사업법인 관리시스템」 가입기관 및 법인에서는 변경등록 내용을 실시간 확인가능 (<http://fec.forest.go.kr>)

〈표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7. 6. 1.>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교부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산림사업종류	법인등록번호	
변경내역			
변경구분	변경연월일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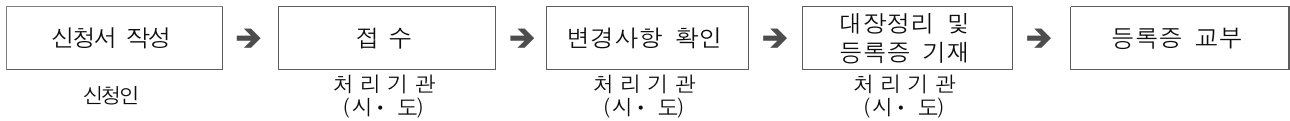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 법인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1.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를 변경하는 경우 1. 변경되는 기술자격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1부 2. 해당 산림사업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작성 방법

변경구분란에는 상호·명칭변경 등 변경사항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표5〉

□ 기술자의 수와 종류 변경등록 신청서

일련 번호	당 초 (변경전 내용)				변 경 (금회 신청내용)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격 등급	자격증 번호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격 등급	자격증 번호
1	홍길동 (6.30.퇴사)				김영희 (7.5.입사)			
2								
3								
4								
5								
6								
7								
8								
9								
10								

※ 작성요령

- ① 성명 : 법인에 소속된 모든 기술자를 기록
- ②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기재
 - 주민등록상 1963년 5월 26일의 남자는 630526으로 기록
- ③ 기술자격 등급
 - 산림경영기술자(기술특급, 기술초급, 기술중급, 기술고급, 기능특급, 기능1급, 기능2급)
 - 산림공학기술자(기술특급, 기술초급, 기술중급, 기술고급)
 - 목구조관리기술자
 - 건축기사
 -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 ④ 자격증 번호
 - 산림기술자 : 자격증발급번호를 기재
(예) 01-21-11-00001 등으로 기재
 - 국가기술자격자 :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기재

4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

□ 등록 취소

○ 당연취소 (법§25③1내지3호)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 폐업한 경우

□ 시정명령 (법§25①1내지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공정표대로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발주기관이 확인한 결과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산림사업법인의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1개월) 안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 3개월 영업정지(시행규칙§28조1호)

-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자본금 미달, 기술인력 부족, 사무실 면적 부족한 상태

□ 6개월 영업정지(시행규칙§28조2호)

-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때(법§25①1내지3호)

【시정명령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 받은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산림사업법인의 중요사항의 변경등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임법령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2. 6. 1., 2013. 3. 23., 2014. 3. 11., 2019. 1. 8.> 1.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29., 2013. 3. 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④ 산림사업법인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 7. 9., 2021. 6. 8.> 1. 산림경영 계획 및 산림조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림토목 관련 사업 4.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사업 5.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사업 6. 숲길 조성·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 6. 20., 2019. 7. 9.>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대표자 3. 법인의 소재지(주소지) 4.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법 제24조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제26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08. 6. 20., 2012. 12. 24.> 1. 법인인감증명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인력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⑤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1. 3. 29.>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1., 2019. 1. 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산림소유자 3.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4.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목재생산을 위한 임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임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5조의2(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2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원목생산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9. 11.]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8. 5., 2012. 12. 2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12. 24.>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 6.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 12. 24.> 제27조(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①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영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영 제24조제3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6. 8., 2014. 9. 25.>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	---	--

		②산림사업법인의 등록내용 중 영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1. 변경되는 기술자격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2. 해당산림사업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의 변경사항란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④산림사업법인의 등록내용을 변경한 때의 산림사업법인등록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하여는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시·도지사는 영 제2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전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4., 2014. 9. 25.>
	제26조(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법 제24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제24조의2(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① 산림사업 도급계약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산립사업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사업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2. 도급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3. 사업의 착수 시기와 완성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금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이 설계변경, 사업의 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및 사업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로 한정한다) 9.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 및 그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0.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1. 사업 내용의 완성 후 도급금액의 지급 시기 12.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3.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4. 해당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	--

	15.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1. 24.]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1. 3. 29., 2012. 6. 1., 2013. 3. 23., 2020. 2. 18.>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공정예정표대로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발주기관이 확인한 결과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의2.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갇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2천2백5십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4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③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른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사업법인이 그 처분절차가 끝나기 전에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절차가 끝날 때까지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29., 2012. 6.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폐업한 경우 ④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0. 2. 18., 2020. 3. 24.>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전문개정 2007. 12. 21.]	
--	--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①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이라도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산림사업은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해당 산림사업의 발주자(發注者)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1. 3. 29.> ③ 산림사업의 발주자는 해당 산림사업법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법인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까지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등록이 취소된 산림사업법인이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산림사업을 완성할 때까지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12. 21.]		
---	--	--

5 법인의 민원신청이 잘못된 사례

□ 법인의 등록 기술자 수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의 경우)

① 기본사항 (7명 이상) : 산림경영기술자 3인이상, 기능2급이상 4명이상

② 잘못하는 사례

- 산림경영기술자가 아닌 산림기사·산림기능사 자격증을 첨부하는 경우
-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에 산림기능사보 자격증을 첨부하는 경우
- 자격증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복사하는 경우

□ 기술자 이중등록 신청

- 법인의 등록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함
 - 비상임 이사가 법인의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나, 법인의 이사를 기술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필히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기술자를 보유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회사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전적으로 그 회사의 업무에만 종사할 의무가 있음
 - 대법원 1992.05.12 선고 91누11247 판결
 - ※ 자격증 대여와 이중취업의 처벌규정은 같음
- 다른 법인에 등록된 기술자를 신청 법인의 기술자로 등록하는 경우
 - 신청 법인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첨부 또는 다른 법인의 퇴사확인서(원본)를 첨부
 - ※ 고용보험은 법적으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자격 취득 신고 시 다른 법인의 고용보험 자격취소를 신고하고 고용보험 가입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시 노동부령에 따라 1개 사업장에만 가입토록 규정
- 시스템을 통해 산림기술자 이중등록 여부 확인

□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 2006.1.1.부터 1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 자본금 보유실적 확인

- 자본금 보유실적 확인을 위해 공인회계사가 발급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실질자본금 유무확인
- 잘못된 사례
 - 등기부등본의 자본금 인정 요구하는 경우
 - 재무제표 제출로 자본금 인정 요구하는 경우

□ 법인 등록변경 신청시 미비사례

○ 법인 주소지, 대표자, 명칭 변경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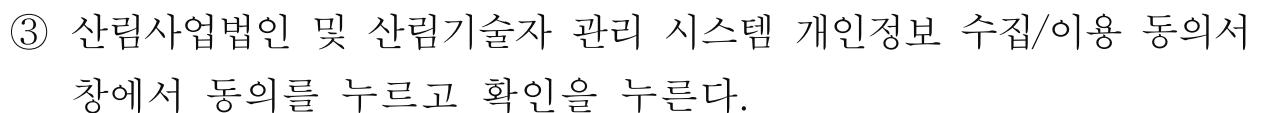
- 법인등기부 등본 (말소사항 포함)
 - 법인의 주소지, 대표자 및 명칭 변경시 구비서류에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함
 - 유효사항만 기록된 법인등기부 등본을 많이 첨부하고 있음
- 주사무실 확보
 - 변경등록시 주사무실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구분상 주사무실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은 변경등록 제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인의 기술자 변경 시

- 법인의 소속 기술자를 모두 기재하지 않는 경우
 - 법인에 등록된 기술자를 모두 기재하여 등록변경 신청하면 모든 자료를
현행화 관리에 용이함.
- 기술자 등록변경 신고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 법인의 대표자는 종업원을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함.

※ 「산림기술법」에 따른 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확인 가능

- ① 인터넷 주소창에 http://fec.forest.go.kr를 입력한다.
- ② 우측 상단에 위치한 **회원가입** 버튼을 누른다.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산림청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회원 관리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술자 등록을 위한 사용신청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술자 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정서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술자, 사업 현황 등의 관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항목 : ID, PW, 성명(법인명), 이메일, 전화번호, 비밀번호힌트, 비밀번호정답, 집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소속(권한)

- 선택 항목 : 팩스, 소속기관코드, 사무실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상세주소, 직위명, 기관명

-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회원탈퇴(담당자 변경) 시 까지 보관합니다.

- 라. 동의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필수항목 동의거부 시 회원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 거부 시 회원가입은 할 수 있으나 일부 서비스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25 –

④ 회원가입 창에서 필수사항 입력 후 등록 버튼을 누른다.

회원가입			
사용자아이디 *		 (중복아이디 검색)	
사용자이름 *			
비밀번호 *		* 9자리이상 15자리 이하 영문, 숫자, 특수문자 혼용하여 입력하여 주십시오.	
비밀번호확인 *			
비밀번호힌트 *	--선택하세요--		
비밀번호정답 *			
소속기관코드	--선택하세요--		
직위명			
성별구분코드	--선택하세요--		
생일			
집전화번호 *	-- -- --		
사무실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			
우편번호 *		도로영우편번호찾기 >	지번우편번호찾기 >
주소 *			
상세주소			
소속 *	법인/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 :  (중복 여부 검색) * 예) 123-12-12345	
기관명			

등록 >
취소 >

⑤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린다. * 3일 이내 처리

⑥ 시스템 관리자의 승인 후 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사용 가능

※ 실시간 자료 확인 결과, 법인에서 신고한 내용과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자 관리시스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7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7-1.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산림기술법)

제26조(산림사업의 안전관리) ① 발주청,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산림사업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방법 및 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한 산림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산림사업의 안전교육 등)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산림사업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와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7.]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

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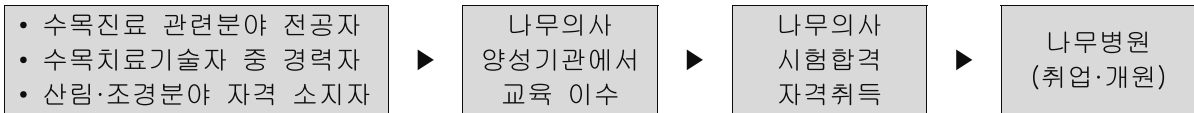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나무병원 및 나무의사 제도 안내

- 국가양성교육과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나무의사가 생활권 수목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수목치료를 수행토록 체계 정비



* 수목치료기술자는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시 자격 부여

□ 산림보호법 시행('18. 6. 28)

- '18. 6. 28일 이전에는 수목보호기술자,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 기사를 보유한 기술자가 산림사업법인(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를 실시하거나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가 대행하고 있었으나,
- '18. 6. 28일 이후부터는 나무병원에 소속된 나무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할 수 있음.
 - 나무의사가 진단·처방시 수목치료기술자의 처치는 가능

□ 나무병원 등록 조건 변경

구분	'18. 6. 28.이전	'18. 6. 28.이후
근거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운영형태	산림사업법인의 한 분야로 운영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
기술자격	• 수목보호기술자 (공인민간자격) • 식물보호기사 (농작물분야 유사자격 활용)	• 나무의사 1단계: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2단계: 국가 자격시험 • 수목치료기술자 1단계: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자본금	1억원	1억원
벌금규정	2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 '18. 6. 28.이후부터 나무병원과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의 인력 공동 활용이 불가

□ 법령 개정 전 나무병원을 운영한 기술자의 경과 규칙

- 산림보호법 부칙(2016.12.27.) 제3조 (수목보호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6월 28일 기준,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국가기술훈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수목피해의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에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2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2023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9 나무병원의 등록 기준

〈표6〉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 <개정 2020. 12. 29.> [유효기간 : 2023년 6월 27일] 2종 나무병원란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				
종류	업무범위	등록기준		
		인력	자본금	시설
1종 나무 병원	수목진료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1명 이상 2. 2020년 6월 28일 이후: <u>나무의사 2명 이상</u> 또는 <u>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u> <u>이상</u>	1억원 이상	사무실
2종 나무 병원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수목치료기술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 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기사·산 업기사·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 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 로 한정한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2020년 6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u>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u>	1억원 이상	사무실
<비고> 1. 인력: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자본금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다만, 자본금 기준의 200%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자(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3. 시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 나무병원 신규등록

□ 등록신청 구비서류 → 나무병원(민원인)

- 등록신청서<표7>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원에서 발급
 - 말소사항 포함(O), 현재 유효사항(X)
 -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4대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험) 모두 가입하고 기술자 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 확인서 첨부
 -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기술자 이름이 모두 등재된 서류첨부<표8>
 - 자격증 사본 : 기록사항을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사본 제출
 - 나무병원 인감 및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기업진단보고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민원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경영지도사가 평가한 기업진단보고서
 - (예) 2022년 3월 20일 전라남도에 법인등록신청서가 접수된 경우→2022년 2월 20일부터 2022년 3월 19일 사이로 진단기준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받은 것
 - 사무실 보유 확인서
 - 제출서류 : 임차계약서, 건축물등기부 등본 및 용도가 기록된 건축물 관리대장
- ※ 임차계약서 공증방법(예)
- 쌍방합의의 경우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제3자 공증방법 : 부동산 중개업자 서명 날인한 임차계약서 첨부
 - 근저당권 설정 : 임차인(법인)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 등본 첨부
 - 세무서 확인 필한 임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 신청서 접수 → 전라남도지사

- 민원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5일 (법정공휴일 제외)
- 검토사항
 - 자격증 취득, 4대보험 가입, 자본금 보유, 나무병원의 법인등기부 등본 등재 사항, 기술자 이중취업 또는 자격여부, 사무실 적합여부

<표7>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6. 28.>

[] 1종 [] 2종 나무병원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법인		명칭			대표자		
		등기번호			설립일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기술 인력	나무 의사	성명	자격번호	성명	자격번호		
	수목 치료 기술자	성명	자격번호	성명	자격번호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2.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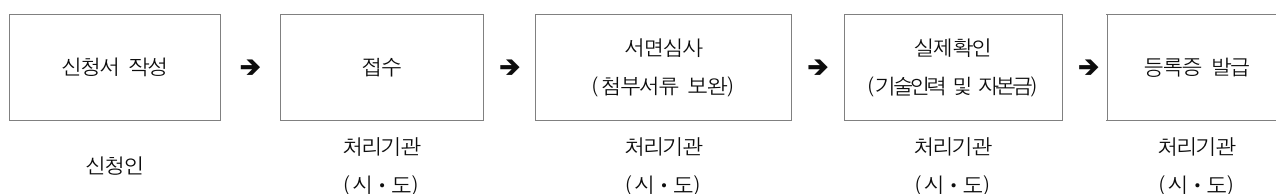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거나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산림보호법」 제54조제4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4조의2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표8〉

☐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일련 번호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격등급	자격증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작성요령

- ① 성명 : 나무병원에 소속된 모든 기술자를 기록
- ②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기재
 - 주민등록상 1963년 5월 26일의 남자는 630526으로 기록
- ③ 기술자격 등급
 - 나무의사
 - 수목치료기술자
- ④ 자격증 번호
 - 산림기술자 : 자격증발급번호를 기재
(예) 01-21-11-00001 등으로 기재
 - 국가기술자격자 :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기재

11, 나무병원 기재사항 변경

나무병원의 명칭, 나무병원의 대표자, 나무병원의 소재지 및 나무의사 등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의무사항).

□ 변경등록 신청 구비서류

- 변경등록 신청서 <표9>
- 나무병원 등기부등본 (나무병원 명칭, 대표자, 소재지 변경의 경우)
 - 말소사항 포함(O), 현재 유효사항(X)
- 기 발급받은 나무병원 등록증
-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술자의 수와 종류 변경 등록의 경우)
 - 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1부.
 -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기술자 이름이 모두 열거된 서류 첨부 <표8>
 - 자격증 사본 : 기록사항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복사

① 나무병원의 대표자, 상호(명칭) 변경의 경우

- 변경등록 신청서 <표9>
- 법인등기부 등본 (말소사항 포함)
- 법인 인감증명서
- 나무병원 등록증 (기 발급받은 나무병원 등록증 원본)

② 주소지 변경의 경우

- 변경등록 신청서 <표9>
- 법인등기부 등본 (말소사항 포함)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본인 건물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가능)
- 나무병원 등록증 원본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공증방법

- 쌍방합의의 경우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제3자 공증방법 : 부동산 중개업자 서명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첨부
- 근저당권 설정 : 임차인(법인)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 등본 첨부
- 세무서 확인 필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③ 기술자격자 변경의 경우

- 변경등록 신청서 <표9>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8>
- 자격증 사본 : 기록사항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복사
 - ※ 퇴사 직원의 경우 신청서에 퇴직날짜를 반드시 기재
-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술자는 4대보험 모두 가입)
 - ※ 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1부.
 -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기술자 이름이 모두 열거된 서류 첨부

□ 변경등록 절차

- ①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 → 민원처리기간 15일 (법정공휴일 제외)
- ②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 법인등기부 등본, 자격증 진위여부, 보험 가입여부, 법인의 인감증명 및 날인된 인감 비교, 기술자 이중취업 또는 자격증 대여여부, 사무실 확인
- ③ 나무병원 변경등록 및 변경등록 내용 알림
 -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상 법인 이력부 정리, 해당 나무병원 통보 (변경등록증 교부)

※ 「산림사업법인 관리시스템」 가입기관 및 나무병원에서는 변경등록 내용을 실시간 확인가능 (<http://fec.forest.go.kr>)

<표9>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15서식] <신설 2018. 6. 28.>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나무병원 종류	법인등록번호		
변경내역	변경구분	변경연월일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예) 상호, 명칭변경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7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나무병원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변경사항 확인	➔	대장정리 및 등록증 기재	➔	등록증 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도)		처 리 기 관 (시·도)		처 리 기 관 (시·도)		처 리 기 관 (시·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2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표10>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8. 6. 26.>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12조의6제1항 관련)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산업기사, 조경기사·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
 - 나.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1.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2.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처방·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

13 나무의사 및 나무병원 행정처분

〈표11〉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0. 6. 2.>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7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동안 자격을 정지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21조의6 제6항제1호	자격 취소			
나. 법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법 제21조의6 제6항제2호	자격 정지 2년	자격 취소		
다. 법 제2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1조의6 제6항제3호	자격 취소			
라. 법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1조의6 제6항제4호	자격 정지 2년	자격 취소		

마. 나무의사 등의 자격정지기 간에 수목진료를 행한 경우	법 제21조의6 제6항제5호	자격 취소			
바. 고의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법 제21조의6 제6항제6호	자격 취소			
사. 과실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법 제21조의6 제6항제7호	자격 정지 2개월	자격 정지 6개월	자격 정지 12개월	자격 취소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법 제21조의12에 따른 처방전등을 발급한 경우	법 제21조의6 제6항제8호	자격 정지 2개월	자격 정지 6개월	자격 정지 12개월	자격 취소

<표12>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7] <개정 2020. 6. 2.>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5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1조의10 제1항제1호	등록 취소			
나.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1조의10 제1항제2호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12개월	등록 취소	
다. 법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의10 제1항제3호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12개월	등록 취소
라. 법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21조의10 제1항제3호	등록 취소			
마. 법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1조의10 제1항제4호	영업 정지 12개월	등록 취소		

바. 법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법 제21조의10제1항제4호의2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12개월
사.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의10제1항제5호	등록 취소			
아. 폐업한 경우	법 제21조의10제1항제6호	등록 취소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등록관리 매뉴얼